

제339회 임시회
2015.04.30.(목)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교육위원회

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5.04.30.(목)

교육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: 이 종 욱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: 2015년 04월 13일

다. 회부일자: 2015년 04월 14일

라. 상정일자: 2015년 04월 22일

(제3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이종욱 의원)

가. 제안이유

제증명 수수료를 무료화 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제명 「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」
를 「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」로 변경함
- 2) 배정수수료, 제증명 수수료 삭제(안 제2조)
- 3) 수수료 징수방법 변경(안 제4조제1항)
- 4) 수수료 면제사유 중 “각급학교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” 및 “민원인이
직접 온라인으로 제증명을 발급받는 경우” 등을 감면사유에서 삭제
(안 제5조제1항1호,2호 및 제2항)
- 5) 제증명 수수료 및 고등학교 전학·편입학 배정 수수료 무료화(안 별표 1)
- 6) 정보공개 수수료 변경(안 별표 2)

3.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: 반기환)

- 본 제정조례안은 각종 제증명 수수료와 고등학교 배정 수수료 등을
무료화 하여,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편의성을 높이는
동시에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제명을 「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」로 변경한
것은, 안 제2조에서 “제증명 수수료”가 삭제됨에 따라, 제명에서
“제증명 등”을 삭제한 것이며,
- 무인민원발급기 확대로 최근 3년 간 도내 각급 기관(학교)의 수수료
징수가 점차 감소추세에 있고, 민원인의 각종 제증명 발급 수수료

300원(영문발급 600원)을 징수하기 위한 행정적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인 바,

- 동 조례 개정안은 제증명 수수료의 무료화를 통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편의성을 높여 실질적인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, 행정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: “원안가결”

7. 소수의견요지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“없음”

9. 첨부서류: 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” 를 “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” 로 한다.

제2조제1항제1호, 제4호 및 제2항의 단서를 삭제한다.

제4조제1항의 내용을 “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결제 방법으로 징수한다” 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

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</u></p>	<p><u>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</u></p>
<p>제2조(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) ① 충청북도교육감 및 산하기관과 각급학교에서 징수하는 교육·학예에 관한 각종수수료(이하 “수수료”라 한다)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배정수수료</u> 2. <u>시험수수료</u> 3. <u>검정고시수수료</u> 4. <u>제증명수수료</u> 5. <u>정보공개수수료</u> <p>② 수수료의 징수 금액은 별표 1, 별표 2와 같다. <u>다만, 외국문으로 발행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의 해당금액의 2배를 징수한다.</u></p>	<p>제2조(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) ①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시험수수료</u> 2. <u>검정고시수수료</u> 3. <u>정보공개수수료</u> <p>② -----</p> <p>-----. <단서 삭제></p>
<p>제4조(수수료 징수 방법) ① <u>별표 1의 사항으로 여러 건을 일괄하여 1통의 증명을 청구할 경우에는 건마다, 같은 내용의 증명을 2통 이상 청구할 경우에는 통마다, 여러 명을 열기하여 청구할 경우에는 1명마다 수수료를 징수한다.</u></p> <p>②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</p>	<p>제4조(수수료 징수 방법) ① <u>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결제 방법으로 징수한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아니한다. 다만,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환급하여야 한다.</p>	
<p>제5조(수수료 징수 면제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국가기관 및 공공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·발급하는 증명</u> 2. <u>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원서 접수 시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와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응시수수료 등의 징수를 면제 받고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경우</u> 3. <u>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</u> <p>② <u>신원 및 학적에 관한 제증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1항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2항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</u> 	<p>제5조(수수료 징수 면제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</u> 2. <u>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</u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삭 제></p>

현행	개정안
<p><u>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</u> 제7조제9항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항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가 제증명을 발급받는 경우</p> <p>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5조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2항,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,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자가 제증명을 발급받는 경우</p> <p>3. 의무교육기관 졸업자의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제증명</p> <p>4. <u>각급학교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</u></p> <p>5. <u>민원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제증명을 발급받는 경우</u></p>	

【별표 1】

수수료 징수 금액(제2조 관련)

구 분	종 류	기준	수수료	비 고
1.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수수료	1. 응시수수료			
	가. 일반시험 나. 실기평가가 포함된 시험	1인당 1인당	25,000 35,000	
2. 검정고시수수료	1.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	1인당	10,000	

【별표 2】

정 보 공 개 수 수 료(제2조 관련)

공개대상	공개방법 및 수수료	
	열람·시청	사본(종이출력물)·인화물·복제물
문서·도면·사진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열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일 1시간 이내: 무료 -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,000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본(종이출력물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A3 이상 300원 · 1장 초과마다 100원 - B4 이하 250원 · 1장 초과마다 50원
필름·테이프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녹음테이프(오디오자료)의 청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1개(60분 기준)마다 1,500원 -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1건(30분 기준)마다 700원 ○ 녹화테이프(비디오자료)의 시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1롤(60분 기준)마다 1,500원 -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1편(30분 기준)마다 700원 ○ 영화필름의 시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1캔(60분 기준)마다 3,500원 -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1편(30분 기준)마다 2,000원 ○ 사진필름의 열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장: 200원 · 1장 초과마다 50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녹음테이프(오디오자료)의 복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1개마다 5,000원 -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1건마다 3,000원 ※ 매체비용은 별도 ○ 녹화테이프(비디오자료)의 복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1롤마다 5,000원 -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1편마다 3,000원 ※ 매체비용은 별도 ○ 사진필름의 복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컷마다 6,000원 ※ 매체비용은 별도 ○ 사진필름의 인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컷마다 500원 · 1장 초과마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3"×5" 200원 5"×7" 300원 8"×10" 400원
마이크로 필름·슬라이드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건(10컷 기준)1회: 500원 ·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○ 슬라이드의 시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컷마다 200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본(종이출력물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A3 이상 300원 · 1장 초과마다 200원 - B4 이하 250원 · 1장 초과마다 150원 ○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롤마다 1,000원 ※ 매체비용은 별도 ○ 슬라이드의 복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컷마다 3,000원 ※ 매체비용은 별도

공개대상	공개방법 및 수수료	
	열람·시청	사본(종이출력물)·인화물·복제물
전자파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자파일(문서·도면·사진 등)의 열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일 1시간 이내 : 무료 -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,000원 ○ 전자파일(오디오자료·비디오자료)의 시청·청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편: 1,500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본(종이출력물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A3 이상 300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1장 초과마다 100원 - B4 이하 250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1장 초과마다 50원 ○ 전자파일(문서·도면·사진 등)의 복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건 1MB(메가바이트) 이내: 무료 -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(다만,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) -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(종이출력물) 수수료가 1/2로 산정 -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(종이출력물)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※ 매체비용은 별도 ○ 전자파일(오디오자료·비디오자료)의 복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건(700MB 기준)마다 5,000원 -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,500원 ※ 매체비용은 별도

< 비고 >

1.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.
2.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, 출력물,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.
3.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.

관 계 법 령 발 취

□ 지방자치법

제137조(수수료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. 다만,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2.3.21.>

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,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 <개정 2009.4.1.>